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248
----------	-------

발의연월일 : 2026. 4. 10.

발 의 자 : 김승수 · 김은혜 · 안철수
이종욱 · 이종배 · 진중오
김선교 · 안상훈 · 김용태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란전쟁 등에서 보듯이 원유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택시 종사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 산업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u>2026년 12월 31일까지</u>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 ----- ----- ----- ----- ----- ----- <u>2031년 12월 31일</u> ----- ----- ----- ----- ----- -----.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